

##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 집행유예가 원칙인가

30대 여성이 출생 직후의 두 아이를 살해하여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밝혀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영아살해나 미수죄의 1심 판결문 24건을 분석해 보니 실형과 집행유예가 12건씩이었다. 실형 선고도 징역 2년 이하가 8건, 징역 3년이 3건이고 징역 5년이 최고로 1건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방치해 죽이고 시신을 강통에 넣어 소각까지 했다고 한다. 2심에서는 또 얼마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을까.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점을 각별히 고려하여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어 규정한 것인데도 법원은 또 다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쉽게 선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경우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또한 주가조작범죄로 기소되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으며, 심지어 범죄수익보다 적은 벌금형도 상당수라는 분석도 있었다.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린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주저되었겠지만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실제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대기업 회장님들은 수천억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유행이고, 선거법사건에서는 당선된 피고인이라고 웬만하면 ‘벌금 80만원’ 선고가 이어진다. 그래서 미리 선고형을 예상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 확신범이나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있을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지 않던가. 법원은 모르고 속는지, 알고도 속고 싶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형법의 법정형 하한을 더 감경하는 선고가 계속되다보니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각종 특별법이 정신없이 만들어졌고, 양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

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영아살해죄를 없애고 그냥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청소년을 상대로 “10억 정도 벌 수 있다면 교도소에서 몇 년 고생해도 좋다.”, “법을 지키면 바보다.”라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수사기관이 온갖 악역을 다 맡아 힘들게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도 법원은 피고인이 불쌍해 보인다고 저렇게 자비로움을 베풀기만 하니 재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남아 있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남발하니 재범률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법은 마냥 무시되고 있다.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재판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그러운 선고형만으로 결코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법률신문)